

#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: 2022. 1. .

제안자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27조의2(5분자유발언)에 규정된 5분자유발언이 가능한 본회의 차수를 모든 차수에서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의원의 발언권을 존중하고 회의 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‘제27조의2제1항 중 “제1차 본회의”를 “본회의”로 한다.

(안 제27조의2 제1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입법예고: 2022. 1. 예정

서울특별시 성동구 규칙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제1항 중 “제1차 본회의”를 “본회의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